

【 4 】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8. 12. 2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의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으면서
- '95.12.6 공포된 법률 제4995호 부칙 제7조의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거 지방세법 규정(제176조 제2항)에 불구하고 '98.12.31 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 시행하던 것을
- 금번 지방세법 개정시 본 특례조항이 2000.12.31(2년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96.1.11 공포된 양주군군세조례 부칙 제2조의 주민세 소득할의 적용시한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양주군군세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 1998.12.31까지를 2000.12.31까지로 개정(부칙안 제2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 안

양주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1996. 1. 11 조례 제1552호) 제2조(적용시한)중 “제15조”를 “제21조”로 하고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1996.1.11조례 제1552호) 제2조(적용시한) <u>제15조</u> 제2항 소 득활의 세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u>1998년 12월 31일까지</u> 적용한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u>제21조</u> 제2항 소 득활의 세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u>2000년 12월 31일까지</u> 적용한다

경우에는 國家가 보유하고 있는 防產施設 또는 防產物資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貸付·讓渡하는 防產業體所有의 防產物資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產 防產物資의 極出增大를 도모함(法 第8條第4項 내지 第6項 新設).

라. 防產物資 등의 研究開發 또는 試製生產을 위촉할 때에는 專門化業體 및 系列化業體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專門化業體 및 系列化業體는 租稅減免 및 秘密嚴守規定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優秀한 技術을 보유한 業體에 대하여 防衛產業의 참여 기회를 擴大함(法 第10條第1項·第2項, 第13條 및 第16條).

마. 防產業體의 品質検査員 확보의무 및 防產物資의 生產·販賣 보고제도 등 불필요한 規制를 废止함(法 第17條第1項·第3項 및 第20條의2 刪除).

바. 防產物資를 적정한 價格에 契約하여 國防豫算의 효율적인 執行을 도모하기 위하여 防產業體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原價計算資料를 政府에 제출하여 不當利得을 얻은 때에는 不當利得金 및 加算金을 還收하도록 함(法 第22條의2 新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199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종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김정길

◎法律 第5,615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

地方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 題目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條例)"는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條例)"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

第26條의3 및 第26條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6條의3(物納)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財產稅 또는 綜合土地稅의 納付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納稅義務者の 申請을 받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所在하는 不動產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物納를 許可할 수 있다.

第26條의4(分納)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財產稅 또는 綜合土地稅의 納付稅額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이 정한 날부터 15日이내에 分納하게 할 수 있다.

“財政委員會” 및 “醫療保險組合”(聯合會)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關する 設立及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으로 하며, 同項第6號은 刪除한다.

第9條, 第10條, 第11條第2項, 第3項, 第57條第4項, 第5項 및 第77條第1項本文中 “內務部長官”을 각기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70條第1項第3號, 第2項, 第71條第3項, 第101條第2號의2, 第112條第4項, 第138條第3項, 第151條의2第2項 但舊, 第182條第6項, 第188條第1項, 第211條第1項, 第224條의9第3項第2號, 第234條의18第3項, 第234條의19, 第234條의31第4項, 第274條第3項, 第275條第2項 및 第276條第3項中 “內務部令”을 각기 “行政自治部令”으로 한다.

法律 第4095號 地方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7條 중 “1998年 12月 31日” 을 “2000年 12月 31日”로 한다.

附 則

(1)(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2)(異議申請의 申請期間 등에 관한 적용례) 第73條第1項, 第74條第1項, 第80條 및 第8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현재 異議申請, 審查請求期間 및는 提訴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3)(住民稅,所得稅 並부에 관한 적용례) 第17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所得稅法 第85條의2 및 法人稅法 第72條의 规定에 의하여 최초로 還給받는 分부터 적용한다.

(4)(一般的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规定에 의하여 稅課 또는 免除하였거나 稅課 または 減免하여야 한 地方稅에 關하여는 종전의 依에 의한다.

◆地方稅法 改正理由

納稅者의 稅負를 위하여 地方稅의 일부 稅目에 物納制度를 新設하고, 地域經濟의 活性化 및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地方稅 重課稅制度를 緩和하는 등 現行制度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納付稅額이 1千萬원이상인 財產稅와 綜合土地稅는 現金대신 不動產으로 物納하거나 分割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法 第26條의3 및 第26條의4).

나. 地方稅法上의 처분에 대한 異議申請, 審查請求 등의 請求期間 을 60日에서 90日로 연장함(法 第73條, 第74條, 第80條 및 第81條).

다. 包括委任을 이유로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이 있었던 取得稅 와 重課稅 대상인 高級住宅·高級娛樂場 등의 범위를 法律에 직접 規定하되, 社會的·經濟的 與件의 變화에 副應하고 納稅者の 過重한 稅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重課稅率을 7.5倍에서 5倍로 下向調整함(法 第112條第2項).

라. 首都圈整備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안에서 法人的 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增築하기 위하여 事業用 不動產을 취득하는 경우 및 法人을 新設하는 경우와 工場을 新設·增設하는 경우에 取得稅 및 登錄稅의 重課倍率을 5倍에서

전 지역 장흥면 전 지역

부 칙 (1991. 12. 31 조례 제141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4. 2.12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7.26 조례 제153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 1.11 조례 제1552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적용시한) 제15조 제2항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 3 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 칙 (1996. 7. 8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1)

양 주 군

군드는 궁운서로서의 흐력을 갖는다.

군 보

선	기 관 의 장
활	6 203

제 116 호

1998년 11월 30일 (월)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 양주군자치법규입법예고 제1998-417호 자치법규입법예고 3

고시

- | | | |
|---------|---|----|
| ○ 양주군고시 | 제1998-118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판매사업설치허가 기준 | 3 |
| ○ 양주군고시 | 제1998-119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기준고시 | 8 |
| ○ 양주군고시 | 제1998-120호 하천내 공작물 설치 허가에 관한 고시 | 11 |
| ○ 양주군고시 | 제1998-123호 하천내 공작물 설치 허가에 관한 고시 | 11 |

공고

○ 양주군공고 제1998-440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신청공고 12

회								
람	(後)	2000. 11. 30.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16 호

자치법규일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1998-417호

양주군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허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8년 11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명 :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의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프준세율로 정하고 있으면서
- 95.12.6 공포된 법률 제4960호 부칙 제7조의 주민세 소득할의 프준세율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거 지방세법 규정(제76조 제2항)에 불구하고 9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 시행하는 것을
- 금번 지방세법개정시(98 정기국회 통과예상됨) 본 특례조항이 2000.12.31(2년간)까지 연장, 이어됨에 따라 96.1.11 공포된 양주군군세조례 부칙 제2조의 주민세 소득할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양주군군세조례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 1998. 12. 31까지를 2000.12.31까지로 연장운영 하고자 함.(부칙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공고일로부터 20일한 군수(창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고 시

양주군 고시 제1998-118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 판매사업설치허가 기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 판매사업설치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8년 11월 19일

양 주 군 수

양주군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 판매사업설치 허가기준